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12
----------	------

발의연월일 : 2025. 2. 5.

발의자 : 우재준 · 서천호 · 한지아
서일준 · 박충권 · 엄태영
임이자 · 김소희 · 박성훈
인요한 · 김장겸 · 이성권
권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

동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법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이라 한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이하 “대리인”이라 한다)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표자”를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등록 · 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 · 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 · 제출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제16조의4(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 (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외제조·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u>대표자</u> 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 ----- ----- ----- ----- --- <u>이를 공동제출 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u> 를 구성하고 대표자---.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 등록 · 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 · 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
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
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
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

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
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의 제시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신 설>

제16조의4(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
1항에 따라 기준 등록신청자료
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 · 생

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 작성 · 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

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
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
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
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
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
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p><u>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제45조의2(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생 략) <u><신 설></u></p> <p>② (생 략) <u><신 설></u></p>	<p><u>제45조의2(권리 · 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u></p> <p><u>② 국외제조 · 생산자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 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 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 <p><u>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	---